

울산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77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0. 8.

제출자 : 중구청장

1. 폐지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,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 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·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그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조례는 실효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「울산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」 폐지
⇒ 「울산광역시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」 대체 규정 신설

3. 근거법규

- 가. 「지방재정법」 제95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)
- 나.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38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)

4. 폐지조례안 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 조치사항 : 해당없음
- 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- 다. 관련부처 승인 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 사항 : 2010. 8. 2 ~ 8. 23(의견 없음)

울산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779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

2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0. 8. 25(수)
- 나. 제출자 :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 : 2010. 8. 30(월)
- 라. 위원회 상정 : 2010. 9. 2(목)

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 전병수)

- 가. 회계관계 공무원은 재정 보증 없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,
- 나.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 관직·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그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조례가 실효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「울산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」 폐지
⇒ 「울산광역시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」 대체 규정 신설

5. 관련법규 :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8조

6. 검토의견

- 가. 본 개정 조례안은
 -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 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
 -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.
- 나. 이에따라
 - 본 조례는 실효(失效)되어 폐기하고
 - 구자체 새로운 『회계 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내부 규정』을 만들어 시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.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